

SEC Class Relief 적용을 위한 회원사 준수 사항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을 말하며, 이하 “SEC”라 한다)의 옵션상품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2013년 7월1일 SEC가 발급한 Class No-Action Relief를 말하며, 이하 “Class Relief”라 한다)를 적용받아 미국에 소재하는 적격투자자(Class Relief에 의한 Eligible Investor 또는 Eligible Broker-Dealer/Eligible Institution을 말하며, 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와 거래하려는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1. Class Relief의 내용을 숙지하고 Class Relief의 요건과 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할 것
2. Class Relief를 적용받기 위해서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첨부 「SEC Class Relief 관련 회원사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
3. Class Relief에 의한 적격투자자와만 거래하며,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3을 말한다) 하의 Rule 15a-6에 의하여 SEC 등록 브로커-딜러를 통해서 적격 기관투자자(Eligible Institution을 말한다)와 거래할 것

※ Class Relief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정의

- (1)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말한다) 하의 Rule 144A(a)(1)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에 해당하거나 또는, Regulation S의 Rule 902(k)(2)(vi)에 의한 “U.S. Person”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기구로서,
 - (2) 미국 옵션시장에서 옵션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 정규시장 옵션상품에 대한 공시서류(Option Disclosure Document를 말한다)를 수령한 바 있는 투자자
4. 적격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하기 이전에 해당 투자자가 서명한 거래자격 및 거래 위험 등에 관한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이를 보관·유지할 것
 5.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상품 중,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기초로 하거나 해당 주식이 포함된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옵션상품을 미국 투자자가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6. 거래소가 적격투자자의 거래 관련 자료, 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거나, 관련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
 7. Class Relief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록, 자료 등을 성실히 거래소에 제공할 것

(첨부) SEC Class Relief 관련 회원사 확인서

(첨부)

SEC Class Relief 관련 회원사 확인서

[회원사명](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을 말하며, 이하 “SEC”라 한다)의 옵션상품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2013년 7월1일 SEC가 발급한 Class No-Action Relief를 말하며, 이하 “Class Relief”라 한다)를 적용 받아 미국에 소재하는 적격투자자(Class Relief에 의한 Eligible Investor 또는 Eligible Broker- Dealer/Eligible Institution을 말하며, 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원은 Class Relief 및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Class Relief의 요건과 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회원은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를 말한다) 하의 Rule 15a-6에 의하여 SEC 등록 브로커-딜러를 통해서 적격 기관투자자(Eligible Institution을 말한다)와 거래한다.
3. 회원은 적격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하기 이전에 해당 투자자가 서명한 거래자격 및 거래위험 등에 관한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징구하고, 이를 보관·유지한다.
4. 회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상품 중,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기초로 하거나 해당 주식이 포함된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옵션상품을 미국 투자자가 매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회원은 Class Relief 업무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후 적격투자자의 주문을 수탁하기 이전에 거래소에 책임자 이름 및 직책, 연락처를 포함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한다.
6. 회원은 SEC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적격투자자의 거래 관련 자료를 거래소에 제공하거나 관련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해당 자료가 SEC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한다.
7. 회원은 Class Relief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록, 자료 등을 거래소에 성실히 제공할 것이며, 이에 동의한다.

발신(회사명) :

주 소 :

제 출 일 자 :

책임자명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사 대표이사 (직인)